

관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3년도 갱신 및 가입 안내

귀 사무소(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관세사회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및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와 업무제휴하여 관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u>2022년 12월 31일자로 만기를 맞이하게 되어 2023년도 갱신 및 가입 안내</u>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관세사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보다 나은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보험료 13% 인하

한국관세사회 및 회원 관세사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도 보험료 13% 인하를 관철시켰습니다. 회원님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사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담보 특별약관 (선택가입사항 : 추가보험료 발생)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은 관세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피보험자인 관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약관(Dishonesty Extension)을 개발해 직원의 횡령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세사는 제외됩니다.

추가 담보의 보상한도는 <u>기본 담보의 50% 적용을 원칙으로</u> 하며, <u>보상한도 및 보험료는</u> 관세사배상책임보험 기본담보와 별도로 각각 적용됩니다. 가입하고자하는 <u>직원(기명가입)의</u>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u>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액 (1청구당 / 연간총)	자기부담금 (1청구당)	사무원 1인당 보험료
1천만원 / 1천만원	5십만원	80,000원
	1백만원	73,000원

-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상 본 특별약관의 "1청구당/연간총" 한도액입니다.

(사무원 1인당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이 아닙니다)

-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특별약관으로 추가 가입하실 수 있으며, 추가 담보의 보상한도는 **기본 담보의 50%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초가입 이후 인지시점에도 연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세사배상책임 보험 기본담보의 자동보고연장기간(6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u>사고가 인지(Discovery)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반드시 보험사에</u> 통지해야하며, 만일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책 처리됨.

※ 보험료 예시 : 관세사 1명, 직원수 1명

가입조건: Case "C" 조건, 보상한도액 2천만원, 자기부담금 2백만원

무사고갱신 할인율 -15%

구분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사무원의 부정행위 (선택 가입)	
담보 기준	배상청구 기준	인지(발견) 기준	
보상한도액	2천만원 (1청구당/총보상한도)	1천만원 (1청구당/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2백만원	5십만원	
보 험 료	260,950원	80,000원	
	(307,000 x 85%)	(고용직원 1명 x 80,000)	

3. 사고공동부담비율(Co-insurance)

가입신청서의 "2.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에는 공동부담비율 기준으로 CASE A), B) 및 C)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보험사고 접수 후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의 일정비율(%)의 해당금액을 피보험자(관세사)가 부담합니다.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이 동일하지만 사고공동부담비율에 따른 보험금 비교

구분	CASE A	CASE B	CASE C	
보상한도액	1 천만원			
자기부담금	2 백만원			
사고공동부담비율	0% (없음)	15%	30%	
보험료	704,000 원	468,000 원	197,000 원	
손해배상액이 1천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예상보험금은? (손해배상액 1천만원 - 자기부담금 2백만원) = 8,000,000 원				
수령 보험금	8,000,000 원 (전액 수령)	6,800,000 원 (1,200,000 차감)	5,600,000 원 (2,400,000 차감)	

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CASE A)의 경우에는 공동부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B)의 경우에는 15%, C)는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가입 조건 변경 불가

도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갱신 또는 신규가입 시 가입한 **보험조건 즉, 사고공동** 부담비율,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오니 갱신 시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인/합동사무소 사고처리 시 해당 관세사 1인 할증제도 운영

법인 또는 합동사무소의 소속 관세사(1인 또는 일부)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인전체가 할증처리 되지 아니하고 사고 처리를 진행한 관세사에게만 할증적용됩니다.

5. 보험조건에 관한 사항

- 1)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Policy (Claims-made Basis)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배상청구기준 증권)
- 2) Dishonesty Extension (Professional Indemnity) : Optional (사무원의 횡령등 부정행위담보 특별약관 : 선택 담보)
- 3) Retroactive Date: Dec.05, 2001 (소급담보일자 : 2001.12.05) (보험책임개시일로써 각 피보험자의 최초 보험책임개시일)
- 4) Extended Reporting Period : 60 days (보고연장기간 : 60일)
- 5) Policy Territory & Jurisdiction : Korea only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 대한민국)
- 6)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징벌적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 7)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원자력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8) Consequential Loss Exclusion (간접손실 부담보)
- 9) 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 Clause (계약상의 가중책임 부담보)
- 10) All Costs & Expenses are included within L.O.L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 포함)
- 11) Claims Co-operation Clause (손해처리 협조 특별약관)
- 12) Millennium Exclusion Clause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13) War & Terrorism Exclusion Clause (전쟁 및 테러행위 부담보 특별약관)
- 14)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제재위반사항 면책약관)
- 15)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전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 16) Premium Application : Refer to the attached (첨부문서 참조)
- 17) 법인(합동사무소 포함)단위의 보험가입 시 보험조건 및 보험료 적용
 - 가. 소급담보일 최초보험개시일. 단, 동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 기 가입중인 관세사의 경우 기존의 소급담보일자 유지 가능
 - 나. 청구당 보상한도액 법인(합동사무소 포함)기준 청구당 보상한도액 적용
 - 다. 확정보험료 법인 소속 관세사별 개별보험료 합산 적용
 - 라.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 의무가입조건
 - 마. 기타 보험조건은 동일함
- 18) 연간 총보상한도액의 복원
 - 가. 복원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후 법정한도액 미만이 된 모든 관세사의 의무복원
 - 나. 복원시점 보험금지급 시점
 - 다. 추가보험료 미경과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적용



- 19) Co-insurance Clause (피보험자 분담비율)
 - 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피보험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20) 동일회사, 동일물품 통관 시 발생한 동일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사고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로 간주됩니다.
- 21) 피보험자인 관세사의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로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관세사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최대 3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담보연장 가입 시에는 보험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보험료의 산정은 1년의 경우 전년도 연간보험료의 100%를, 2년의 경우 175%, 3년의 경우 25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보험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입가능하며 증액할 수 없습니다.
- 22) 모든 보험조건 및 요율은 한국관세사회 보험심사위원회 운영 조건으로 유효합니다.

6. 등록관세사 전원 가입 원칙

각 개인 및 합동사무소 그리고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포함) 소속 등록관세사 전원이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부 관세사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업신고시 "영업종류" 해당사항에 <u>"관세사법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수행으로 신고한</u> 관세사는 보험조건을 달리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하나의 사고

동일회사, 동일물품 통관 시 발생한 동일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사고들은 수입신고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로 처리됩니다. 즉, 동일한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원인의 과실이 반복되어 행해졌다면 하나의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시 1청구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8. 청구당 보상한도 5천만원 초과 가입 희망 시

단체보험상 청구당 보상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9. 보고기간연장담보(ERP) 가입가능

피보험자인 관세사의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로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관세사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최대 3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담보연장 가입 시에는 보험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산정은 1년의 경우 전년도 연간보험료의 100%를, 2년의 경우 175%, 3년의 경우 25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입 가능하며 증액할 수 없습니다.

10. 갱신이 되어 야만 계속적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은 <u>유효한</u> 보험가입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배상 청구기준증권으로 갱신을 하시면 최초 보험가입일(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u>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이 종료되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u>. 따라서 보험계약의 갱신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보험약관 확인 요망

이 보험의 보상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라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cba.or.kr) → 로그인 후 회원전용 → 회원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이 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첨부

2011.9.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와 별도로 첨부해 드린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3. 상품설명내용에 따른 확인사항

이 보험상품의 주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한 후 받는 확인서로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가입신청 시에는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14.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류 Fax 발송
 - ▶ 가입신청서 : 할인/할증율이 확인 및 적용된 납입보험료 기재 요망
 -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관세사님별로 1인 1매 작성
 - ▶ 상품설명내용에 대한 피보험자(관세사) 확인 사항 : 계약 진행 관세사님이 작성
- 보험료 송금 : 반드시 "관세사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입금 은행명 : 신한은행 / 예금주 : 록톤컴퍼니즈코리아 / 계좌번호 : 140-005-862117
- 2022. 12. 30 (금) 까지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담당 : 이순옥상무 / 윤원이사 / 윤자영부장 / 박순정과장 / 이채은사원)		
가입문의 및 상담			
	Tel: 02-2011-0300 Fax: 0503-8379-2008 / 02-2011-0301		